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제2021-139호<br/>2021년 7월 20일(화)</p> | <p>시  보<br/>여수시</p> | <p><b>시 정 지 표</b><br/>                 시민공감 감동시정<br/>                 균형있는 상생경제<br/>                 사람중심 나눔복지<br/>                 품격있는 문화관광<br/>                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1-2023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분양 추가 공고(수의계약) 3
- 여수시 공고 제2021-2036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18
- 여수시 공고 제2021-2039호 방치폐기물 제거 공고 19

기 타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

# 여수국가산단(삼동지구) 분양 추가 공고(수의계약)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3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추가 공고합니다.

2021. 7. 20.

## 여 수 시 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

### 1. 분양대상용지

| 구 분    | 필지  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금액(천원)         | 매각방법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총 계    | 8필지    | 28197.7             | 16,213,192,050 |      |
| 생산지원시설 | 1029-1 | 6,501.8             | 3,607,697,390  | 수의계약 |
|        | 1029-2 | 5,938.7             | 3,247,661,570  |      |
| 공공지원용지 | 1040-1 | 2,144.3             | 1,306,772,550  |      |
|        | 1040-2 | 2,203.0             | 1,335,925,500  |      |
|        | 1040-3 | 2,204.0             | 1,316,666,890  |      |
|        | 1040-4 | 1,918.2             | 1,145,934,310  |      |
| 복합시설용지 | 1039-2 | 3,906.8             | 2,312,374,140  |      |
|        | 1039-1 | 3,380.9             | 1,940,159,700  |      |

### 2. 분양대상 자격요건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.

※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입찰 및 입주가 제한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사전 문의 바람 (☎ 070-8895-7993)

### 3. 입주대상 업종

#### 가. 생산지원시설용지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
※별표1 제5호 라목 -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(마목에 한함)  
※별표1 제10호 마목 - 연구소 (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사목에 한함)

※별표1 제19호 사목 - 도료류 판매소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(나목, 라목, 바목에 한함)

※별표1 제20호 나목, 라목, 바목 - 세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

#### 나. 공공지원시설용지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

※별표1 제5호 라목 -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#### 다. 복합시설용지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(오피스텔은 제외)

### 4. 입주제한업종

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사전 문의

{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☎ 070-8895-7993}

### 5. 계약일정

가. 공고기간 : 2021. 7. 20. ~ 8. 3.(15일간)

나. 신청접수 : 2021. 7. 20.부터 - 여수시, 한국산업단지공단

다. 입주심사 : 2021. 7. 21.부터 -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

라. 입주심사결과통보 : 2021. 7. 23.부터 (산단공 → 신청업체, 여수시)

마. 분양계약체결 : 2021. 7. 26.부터 (여수시 ↔ 업체)

바. 입주계약체결 : 2021. 7. 28.부터 (산단공 ↔ 선정업체)

※ 분양계약금(10%)를 납부한 후 여수시(공영개발과)에서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함.

### 6. 계약 방법

가.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친 실수요자에 한하여 여수시와 매매계약 체결

나.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

## 7. 구비서류

가. 입주심사 신청서류 접수 시(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)

- ①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.
- ②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)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나.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계약 체결 시

### 【분양계약 - 여수시】

- ①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)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②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.
- ③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,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)
- ④ 계약금 납입 영수증

### 【입주계약 -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】

- ① 분양계약금(분양대금의 10%) 납부영수증 지참
- ②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,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)

## 8.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

가. 계약금 : 계약체결일에 10%납부(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일부 대체)

나. 중도 1차 :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다. 중도 2차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라. 잔금 :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마. 분양대금(중도금, 잔금)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되면 연체일수에 따라 우리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(연체이자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분양대금 납부 :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전자납부

## 9.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

가. 토지사용 승낙 : 분양대금의 70%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류용 토지사용 승낙 가능.

나. 소유권 이전 :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을 원칙

## 10. 계약해제

- 가.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
- 나.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다. 분양계약서 제13조를 위반 하였을 경우, 제14조에 의거 분양계약금을 시에 귀속합니다.

## 11. 미분양토지 처리방안

○ 지원시설용지: 수의계약(선착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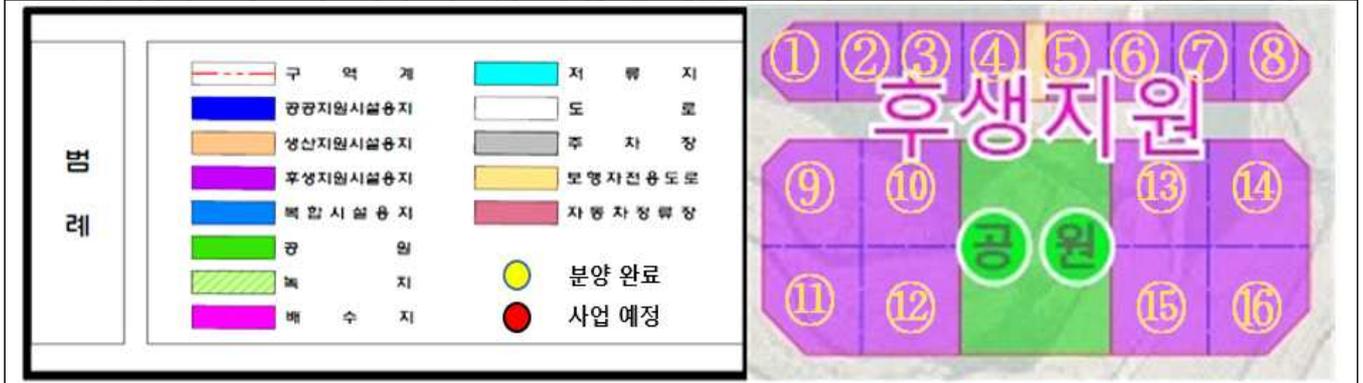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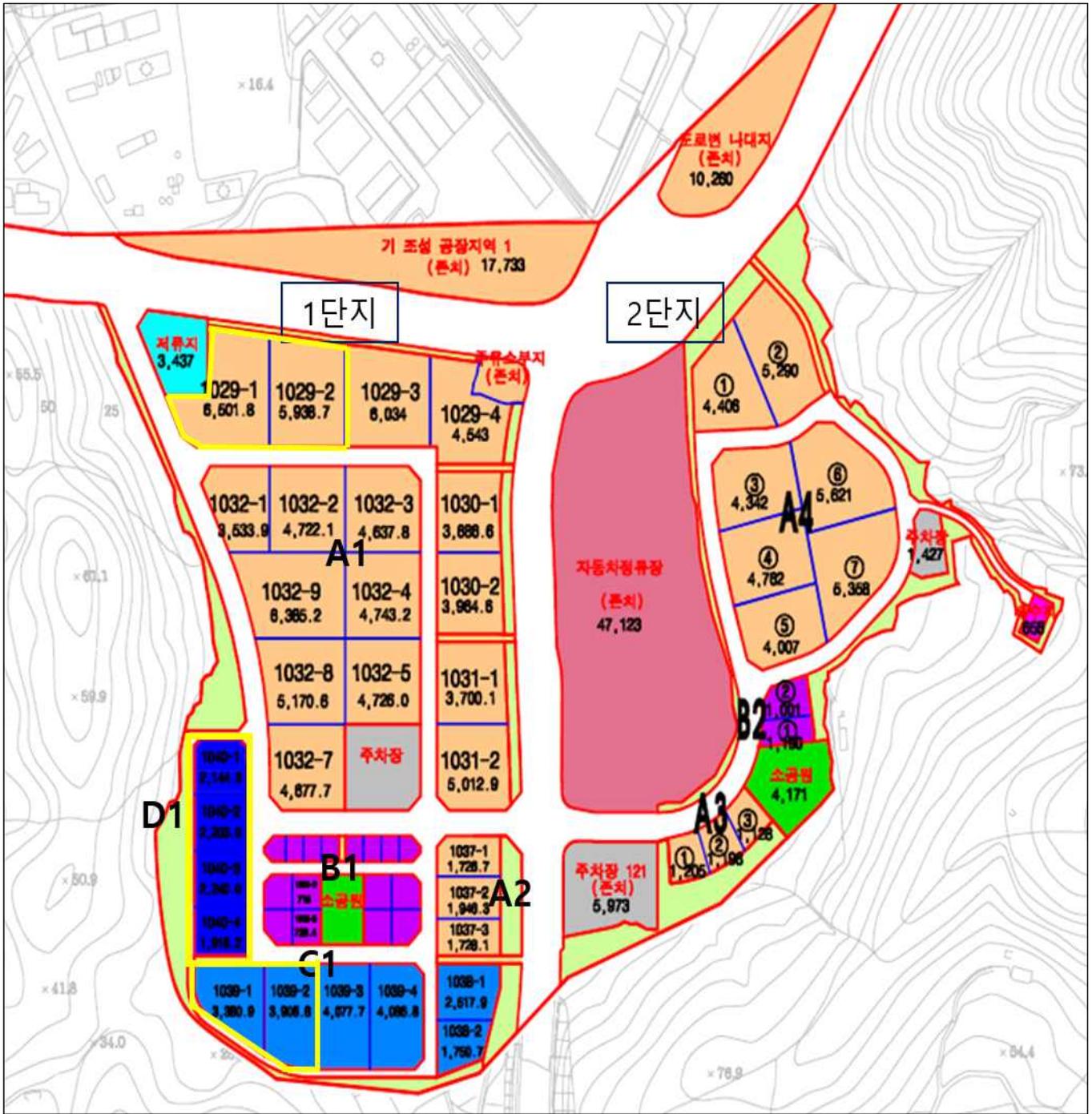
※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(재산매각 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동안만 적용)

## 12. 유의사항

- 가. 본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, 환경·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, 토지 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열람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우수·오수·상수 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·연결 하여야 하고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, 토지사용 중 도로, 상하수도, 경계석,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·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라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마. 분양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각종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바. 분양토지에 당초 지하시설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.
- 사. 분양토지의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명의인 변경, 권리의무승계 등 계약자 변경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아.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공고 없이 본 게시내용에 변경, 추가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자. 소유권이전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 합니다.
- 차.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삼동지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생골재를 일부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타.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(☎061-659-4586, 061-659-4592) 및 한국산업단지  
공단 전남지역본부(☎070-8895-79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1.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 분양도면



## 2. 분양토지 필지조서

| 일련<br>번호 | 소재지 | 지번     | 면적<br>(㎡) | 단가(㎡)   | 금 액(원)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1        | 주삼동 | 1029-1 | 6,501.8   | 554,000 | 3,607,697,390 | 생산지원 |
| 2        | 주삼동 | 1029-2 | 5,938.7   | 546,000 | 3,247,661,570 |      |
| 3        | 주삼동 | 1039-1 | 3,380.9   | 573,000 | 1,940,159,700 | 복합시설 |
| 4        | 주삼동 | 1039-2 | 3,906.8   | 591,000 | 2,312,374,140 |      |
| 5        | 주삼동 | 1040-1 | 2,144.3   | 608,500 | 1,306,772,550 | 공공지원 |
| 6        | 주삼동 | 1040-2 | 2,203.0   | 605,500 | 1,335,925,500 |      |
| 7        | 주삼동 | 1040-3 | 2,204.0   | 596,500 | 1,316,666,890 |      |
| 8        | 주삼동 | 1040-4 | 1,918.2   | 596,500 | 1,145,934,310 |      |

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(삼동지구)  
분양 토지 계약서

여 수 시

#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(삼동지구) 분양계약서

■ 입주기업체

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업 체 명  |                | 대 표 자   |                |
| 업 종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용 지    | m <sup>2</sup> | 건 축 면 적 | m <sup>2</sup> |
| 연 면 적  | m <sup>2</sup> | 부대시설면적  | m <sup>2</sup> |
| 준공 예정일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
■ 분양받은 토지의 표시

|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소재지     | 번지 | 지정용도 | 지목 | 면적             | 비고 |
| 여수시 주삼동 |    |      |    | m <sup>2</sup> |    |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지원 시설용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여수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칭한다)과 입주업체인 (이하 “을”이라 칭한다)간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계약의 성립과 효력)**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**제2조(매매대금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)**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,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| 매매대금 : 금 원(금 원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대 금 납 부 방 법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| 납부약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 입 액 | 납부금액 | 미납액 |
| 계약보증금            | 계약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1회 할부금           | 계약일 3월이내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2회 할부금           | 계약일 6월이내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잔 금              | 계약일 9월이내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
| 납 부 장 소          | 광주은행(여수시청 시금고), 납부방법 : 고지서 발급 |       |      |     |

② **갑**이 **을**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, 원금의 순에 의한다.

**제3조(지연손해금)**① **을**이 제2조의 매매대금(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)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지정금융기관(광주은행)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년(15%)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**갑**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·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**을**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

**제4조(공공시설이용 및 부담금)** **을**은 계약체결 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및 관리비등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.

**제5조(조세공과금의 부담)**① 제2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**갑**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**을**이 부담하기로 한다.

② **을**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**갑**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할 때에는 그 사용 승낙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.

**제6조(의사표시 및 통지의무)**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은 이 계약체결 이후 할부이자율·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**을**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**을**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·명칭 또는 주소·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**갑**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**갑**의 **을**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**갑**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.

**제7조(목적용지의 사용)**① **을**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**을**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**갑**은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**을**

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을은 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을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또는 분양대금 70%이상을 납부하였을 시 갑은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용지를 사용 승인 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적기준 및 정산)**①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,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.

②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정측량성과 및 정산내역, 정산금 납부방법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.

**제9조(소유권 이전)**① 갑은 을이 분양대금(정산금을 포함한다)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. 다만,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.

②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을의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,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한다.

**제10조(담보권의 행사)**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7조 제3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.

**제11조(기한이익의 상실)**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2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을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
2.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

또는 파산의 신청(자기 신청을 포함한다)이 있었을 때

**제12조(조성사업의 시행 등)**① **을**이 조성사업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**을**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. 이 경우 **을**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**갑**은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**갑**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 **을**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**을**에게 지급하거나 **을**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. 다만, **갑**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,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
3. 태풍·해일·홍수·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
4. 문화재 발굴,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기타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**갑**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

**제13조(분양계약의 해지)**① **을**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**갑**은 **을**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**을**이 허위의 진술,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,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
2. **을**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
3. **을**이 목적용지 및 공장 등을 **갑**의 동의 없이 불법양도하거나 임대한 때
4. **을**이 제11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**갑**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
5. 착공이 가능한 날(공장착공 가능통보일)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6. **을**이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

7.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

8. 기타 **을**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
② **을**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**을**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

2. **갑**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다만,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③ 이 계약체결이후 **갑** 또는 **을**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**갑**과 **을**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을**은 즉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,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,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계약보증금·위약금 귀속)**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갑**은 **을**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**을**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**갑**에게 귀속한다.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 회복 비용 등 **을**이 부담할 비용은 **갑**이 **을**에게 반환하는 매매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.

②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갑**은 **을**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. 이때, **갑**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**을**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나머지금액 및 제2항 매매대금을 **을**에게 지급 시는 실제 납부 일부부터 환금일까지 지정금융기관(광주은행) 요구불 금리로 지급하되 관련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
④ 을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초 분양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.

**제15조(공장의 건축)** ① 을이 건설할 공장 및 기타시설의 착수시한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② 을이 공장 등 기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추가약정)**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.

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.

2021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“갑” 賣 渡 人 : 여 수 시 장 (인)

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

“을” 買 受 人  업 체 명 :

대 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

##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| 면허<br>번호 | 연장<br>허가<br>번호 | 양식업의<br>종류<br>(양식방법) | 면적<br>(ha) | 양식장<br>위치 | 면허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 연장허가<br>기 간                | 수산자원<br>조성금<br>(천원) | 양 식 업 권 자     |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| 성 명        |    |
| 11279    | 2021-15        | 패류양식<br>(가두리식)       | 3.0        | 남면<br>두라  | 2011.08.05.<br>2021.08.04. | 2021.08.05.<br>2031.08.04. | -                   | 여수시 남면<br>유송리 | 함구미<br>어촌계 |    |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1. 07. 20.

여 수 시 장

##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

우리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(폐파이프)이 항해 선박 등에 해양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**2021년 8월 3일(화)**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7월 20일

### 여 수 시 장

1. 공 고 기 간 : 2021. 7. 20. ~ 2021. 8. 3.(14일간)

2.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: 폐파이프(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)

3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
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(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)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(☎061-659-3972)로 연락바랍니다.

## 제거대상 물건 내용

| 관리번호    | 명칭 및 제원                | 방치장소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021-17 | 폐파이프<br>(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) | 거문도 고도 남동방 약 0.7마일<br>(34-01-18.82N / 127-20-12.08E) |

|  |  |   |           |
|--|--|---|-----------|
| 여수시 공고 제 2021-2039호  |  |   |           |
| <b>무 단 방 치 물 제 거 공 고</b>   |  |   |           |
| 발견장소   |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고도 남동방 약0.7마일<br>(34-01-18.82N / 127-20-12.08E) |   |           |
| 물 건 제 원  | 폐파이프(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)   |   |           |
| 관 리 청  | 여수시청   | 관 리 번 호   | 제2021-17호 |
| 제거 예정일자  | 2021년 8월 3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 제 거 방 법  | 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  |   |           |
| 공매장소 및 일시  | -  |   |           |
| 입찰 보증금   | -  |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|
| 위치도  |  | 현장사진  |           |
| <p>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항해시 충돌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b>2021년 8월 3일(화)</b>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  |   |           |
| 2021년 7월 20일   |  |   |           |
| 여 수 시 장  |  |   |           |
| (담당자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2)   |  |   |           |